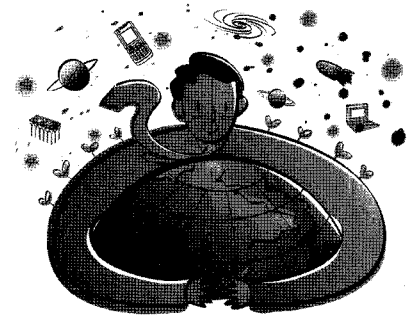


# 인니 수입전자에 자국어 라벨링



'10.5.21일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니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통신제품군 등 4개 제품군의 포장에 인니어 표기 라벨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10.9.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적용대상 제품군은 전기전자제품군, 건축자재 제품군, 자동차(수리부속 포함) 관련 제품군 및 기타 생활용품군의 4개군이다.

우리 제품 중 라벨링 규정을 적용받는 제품의 비율은 HS code 2자리 단위기준으로는, '09년 대인니 수출액 59.9억\$ 중 26.9억\$로서 약49%이다.

라벨 표기내용은 상품명(또는 브랜드명), 제조자

명·주소, 수입자명·주소, 제조국 등이나, 그 내용이 제품마다 다소 상이하고, 묶음(bulk)판매 제품, 소비자와의 거래시 포장되는 제품 및 원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은 라벨링이 면제되므로 제조자마다 인니 규정의 조속한 확인이 요구된다.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6 자리 기준을 적용하고, 원자재를 고려하면 대상 금액이 크게 감소될 수 있으나, 최근의 대인니 수출증가 및 신규수출 제품의 확대추세를 고려 시, 금번 라벨링 규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긴요한 것이다.

전기제품의 라벨에는 제품유형, 전압, 주파수(Hz)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니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 \$)

년 도	수 출				수 입				대인니 무역 수지
	대인니	증가율	세계전체	인니비중	대인니	증가율	세계전체	인니비중	
2007	5,771	18.4%	371,489	1.6%	9,114	3 %	356,846	2.6%	-3,343
2008	7,934	37.5%	422,007	1.9%	11,320	24 %	435,275	2.6%	-3,387
2009	6,000	-24.4%	363,534	1.7%	9,264	-18 %	323,085	2.9%	-3,264
2010 (01~04월)	2,686	80.6%	140,803	1.9%	4,795	82 %	133,300	3.6%	-2,10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 인니수출 상위 12개 제품단위 현황 】

(단위 : 천 \$)

순 위	HS code	품 명	'09년 실적	'10(01~04월) 실적	동기대비 증가율	라벨링 대상유무
1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517,627	918,201	436.5 %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786,096	327,809	36.5 %	대상
3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16,020	194,334	72 %	대상
4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465,877	195,083	35.4 %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52,730	178,722	44.2 %	대상
6	72	철강	410,935	157,678	38.6 %	대상
7	29	유기화합물	179,484	62,465	12.5 %	
8	40	고무와 그 제품	149,773	70,245	105 %	대상
9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45,692	54,289	52.6 %	대상
10	73	철강 제품	125,573	30,608	-46.4 %	대상
1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06,963	37,835	160.7 %	대상
12	54	인조장섬유	103,007	44,128	34.9 %	

등이, 도금된 금속봉의 라벨에는 직경, 길이, 도금 두께 등이 추가되는 등 제품마다 라벨내용이 상이하다.

특히 중소 수출업체가 규제의 9월 시행, 라벨 표기 방법 및 라벨링 면제대상 관련 정보를 늦게 알게 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인니규정을 번역하여 기술표준원 TBT중앙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동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니 정부는 '09.11월 '10.12.21일부터 라벨링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금번에 라벨링 면제 제품군을 4개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조치와 유예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하는 규제 강화조치를 병행하였다. '09.11월 규정에서는 라벨링 면제 원자재를 자동차 관련 제품군으로만 한정하였다.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09.11월 인니 정부의 발

표이후,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자재로 사용되는 철강제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인니 정부에 요구하였다.

'10.4월 인니 정부가 라벨링 규정을 '10.7월부터 시행코자 한다는 현지 정보를 입수한 후, 4.21일 인니 TBT질의처인 BSN에 서한을 발송, 조기사행 시 TBT위원회로의 통보 및 통보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이행 준비기간 부여를 요구하였던 바 금번 인니의 면제 제품범위 확대 및 '10.9월 시행 조치에는 우리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기술표준원은 현지공관, 무역협회 등과 협조하여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필요시 인니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우리업체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